

의안번호	2212312
의 퇴 인	김미애 의원
회 답 일	2025.10.31.
추 계 번호	25E5418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액 양도자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 환급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0조의3(소액 양도자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 환급)	○ 연간 총 양도금액이 1억원 미만인 개인 또는 총 주권양도이익(이익과 손실 합산)이 0보다 작은 개인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거래징수된 증권거래세를 환급 - (대상)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증권시장 밖에서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해 양도되는 주권이나 협회 등을 통한 장외거래 방식으로 양도되는 주권 - 단, 동 환급금에 대해서는 국세환급가산금¹⁾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0조의3(소액양도자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 환급)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1) 「국세기본법」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 ② 제51조제8항에 따라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지급결정을 한 날까지 가산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의 처리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1.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
 2.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

2. 상세 사유

- 연간 총 양도금액이 1억원 미만이거나 총 주권양도이익(이익과 손실 합산)이 0보다 작은 소액 양도자 등에 대하여 해당 연도의 증권거래세 납부액을 환급할 경우 증권거래세수 감소가 예상됨(안 제10조의3 신설)
- 개정안의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①연간 총 양도금액이 1억원 미만인 개인의 주권 시장별 양도금액, ②연간 총 주권 양도 순이익이 0보다 작은 개인의 주권 시장별 양도금액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나, 현재 관련 자료가 별도 집계되지 않는 등 해당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세수효과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표 1] 주권 시장별 증권거래세율: 2023~2025년

(단위: %)

연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그 외(장외거래, 비상장주식 등)
2023년	0.05	0.20	0.10	0.35
2024년	0.03	0.18	0.10	0.35
2025년	0	0.15	0.10	0.35

[표 2] 주권 시장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납부할세액(귀속 기준) : 2023~2024년

(단위: 조원)

연도	코스피		코스닥(코넥스 등 포함)		그 외(장외거래, 비상장주식 등)	
	과세표준	납부할세액	과세표준	납부할세액	과세표준	납부할세액
2023년	2,347	1.0	2,448	4.8	84	0.2
2024년	2,629	0.7	2,057	3.6	93	0.2

주: 1.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납부할 세액은 2024년 실적(귀속)이 가장 최신자료임
 2.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을 의미
 자료: 연도별 국세통계연보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김효경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효경	02-6788-4647	hkkim@assembly.go.kr